

2025년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가전 지원』 공고문

(시행일 2025.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가전 구매시 기기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실현
- 사업예산 : 125.2억원 (※ 예산 소진 시 '25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5.2.17(월) ~ '25.12.31(수)
 - '25.1.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2.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구매한 가구
- 지원기기 :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개 품목

품 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 목	등급	적용기준일
냉장고	1	'18.4.1	공기청정기	1	'18.1.1
김치냉장고	1	'17.7.1	TV	1	'18.1.1
에어컨	벽걸이	1	제습기	1	'16.10.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의류건조기	1	'20.3.1
	드럼	1			
전기밥솥	1	'18.4.1	식기세척기	1	'25.1.1
진공청소기(유선)	1~3	'19.1.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5년부터 냉온수기 지원 제외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기준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제품의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 기기별 상세 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가구는 각 구역전기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고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시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지원제외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5.1.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5.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 필수 증빙서류

구 분	서류종류	확 인 내 용
기본서류 (본인신청시)	신분증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등록, 예금주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거래일시, 거래금액, 모델명
	영수증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상호
	효율등급 라벨사진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제조번호 명판사진	제조번호(중복 지원 확인), 모델명
가구원신청	기본서류+주민등록등본	복지할인 대상자의 가구원
사회복지시설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 지원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	지원비율
장애인(기준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30% 환급 30만원 한도
3자녀 이상가구,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15% 환급 30만원 한도

○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

3.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절차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복지할인가구 고효율가전지원사업
(접속주소 : <http://support.kepco.co.kr>)

4. 부정청구 등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행위' 확인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5배), 수사의뢰, 형사처벌 할수 있음

※ (부정행위 주요사례) ①구매가격을 할인받거나 현금등의 페이백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혜택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②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5. 기타사항

▪ 문의처 : 대표 번호 1551-1212, 홈페이지 <http://support.kepco.co.kr>

▪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붙 임 : 1.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2. 구역전기사업자 문의처